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제2차 등기소 신·재축 장기계획 중 대도시 등기소의 광역화계획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을 설치하여 인천광역시 전 지역의 상업등기사무와 인천광역시 남구, 연수구, 중구, 동구, 용진군, 부평구, 계양구, 남동구, 서구의 부동산등기사무 등을 관할하게 하고,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동인천등기소, 북인천등기소, 계양등기소, 남동등기소, 서인천등기소를 각각 폐소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전 지역의 상업등기사무를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관할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중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동인천등

기소, 북인천등기소, 계양등기소, 남동등기소, 서인천등기소란을 각각 삭제하고, 인천지방법원 등기국란을 신설하여 관할구역을 인천광역시 남구, 연수구, 중구, 동구, 옹진군, 부평구, 계양구, 남동구, 서구로 함.(안 별표)

4.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인천지방법원”을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으로 한다.

별표 중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동인천등기소, 북인천등기소, 계양등기소, 남동등기소, 서인천등기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명 칭			관 할 구 역	
지 방 법 원	지 원	등 기 소	시·도명	시·구·군명
인 천		등 기 국	인천광역시	남구, 연수구, 중구, 동구, 옹진군, 부평구, 계양구, 남동구, 서구(단, 상업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인천광역시 전지역)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생략>			
인천	<신 설>		
	등기과	인천광역시	남구, 연수구(단, 상업등기와 동산·채권담보등기는 인천광역시 전지역, 선박등기는 강화군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전지역)
	동인천	"	중구, 동구, 용진군
	북인천	"	부평구
	계양	"	계양구
	남동	"	남동구
	서인천	"	서구
	<이하 생략>		

<이상 생략>			
인천	등기국	인천광역시	남구, 연수구, 중구, 동구, 용진군, 부평구, 계양구, 남동구, 서구(단, 상업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인천광역시 전지역)
	<삭 제>		
<이하 생략>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연락처	(02) 3480-1394